

인천지방법원 2021. 8. 25 선고 2020가단270915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
피 고 A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1.
판 결 선 고 2021. 8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① 피고와 C가 2019. 11. 18.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‘89,765,929원과 그중 88,977,179원에 대하여 2020. 10. 20.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8%의 비율로 셈한 돈’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, 피고는 원고에게 ‘89,765,929원과 그중 88,977,179원에 대하여 2020. 10. 20.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8%의 비율로 셈한 돈’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래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. 12. 2.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 그 후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이미 맺었던 신용보증약정(C는 그 약정의 연대보증인이었음) 등에 따라 2020. 10. 19.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에 88,977,17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툼다.

다. 살피건대,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마련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런 채권도 (예외적으로)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, 이 사건에서 C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무렵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, 오히려 을 8, 13, 15, 16, 2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무렵 이른바 ‘선의의 수익자’였던 사정[그리하여 이 법원은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압류이의 신청사건에서 ‘채무자(☞ 피고, 이하 같음)와 매도인 C 사이에 혈연 내지 지인 등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점,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고,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, 매매목적물에 가압류 기입등기 등이 없어 채무자가 C의 채무상태를 의심할 만한 상황도

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수익자인 채무자에 관한 악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'는 이유로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음}이 인정되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판사 박관근

[별지 목록]

인천광역시 서구

[도로명주소]

인천광역시 서구

철근콘크리트구조

경사슬라브지붕 5층

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-단지형연립주택)

1층 32.16㎡

2층 453.28㎡

3층 453.28㎡

4층 453.28㎡

5층 452.95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.26㎡

소유권대지권 788분의 28.196

